

임실군 의회 공고 2026 - 5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고령화되는 농업인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마.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은 기계일 것
3. “농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 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5.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정보 제공
6. 그 밖에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드론영농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소요

나. 관련조문 :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 드론영농 활성화 지원
- 비용추계 기간 : 2026 ~ 2030년

나. 비용추계의 결과

- 15,000천원 /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 / 년
- 381,500천원 / 벼 병해충 사후(항공)방제지원 / 년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년도	세부사업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규모	비고
2026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인력육성)	민간인 위탁교육비	1,500천원*10명	15,000	
2026	식량작물 현장지원	민간자본 이전	5,000ha*218천원*35%	381,500	

3. 재원조달방안 및 연도별 비용추계표(2026~2030) : 별첨 참조

4. 작성자 : 김종규 의원

<별첨>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396,500	396,500	396,500	396,500	396,500	1,982,500
민간인위탁 교육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민간자본이전		381,500	381,500	381,500	381,500	381,500	1,907,500
재원 조달		396,500	396,500	396,500	396,500	396,500	1,982,500
의 존 재 원	소계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보조금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지방교부세						
	...						
자 체 재 원	소계	389,000	389,000	389,000	389,000	389,000	1,945,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389,000	389,000	389,000	389,000	389,000	1,945,000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련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